

무배당 VIP특정 교통재해보장보험
보통보험약관

(1종: 비행기·열차 교통재해보장형)

무배당 VIP특정 교통재해보장보험 보통보험약관

(1종: 비행기·열차 교통재해보장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이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 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분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

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
2.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제6조 【피보험자의 변경】

①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피보험자는 변경되는 피보험자와 같은 성(性)에 한 합니다.

② 회사는 새로운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의 변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피보험자의 변경시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내지 제4항, 제2조(청약의 철회), 제8조(계약의 소멸), 제9조(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항 내지 제4항, 제18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제19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제1항의 경우 변경되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변경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때로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때로부터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⑤ 제4항의 경우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⑥ 피보험자의 변경시 제8조(계약의 소멸) 제2항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제8조 【계약의 소멸】

- ①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에게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② 이 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6조(피보험자의 변경)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 신용카드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보험료 매출승인일, 이 약관의 다른 규정에서도 같습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시에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9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18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10 조 【“비행기·열차 사고”의 정의】

이 계약에서 “비행기·열차에 의한 교통사고”라 함은 별표2(비행기·열차에 의한 교통사고 분류표)에서 정하는 항공 및 우주운수사고, 철도사고를 말합니다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발생한 비행기·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별표3(장해등급분류표)에서 정한 제1급의 장해(이하 “제1급의 장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비행기·열차 교통재해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비행기·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로 인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비행기·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②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제1급의 장해상태의 등급이 비행기·열차에 의한 교통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행기·열차에 의한 교통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 ③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비행기·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두 종목 이상의 제1급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한종목에 해당하는 비행기·열차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 ④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비행기·열차에 의한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비행기·열차에 의한 교통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교통재해로 인하여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애상대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5조 【해약환급금】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제16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7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보장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18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

무”와 같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계약전 알릴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②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청약서상의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을 해지합니다.

⑤ 제18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0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2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3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25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9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6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 의한 비행기·열차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5조(보험금 등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7조 【계약내용의 교환】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활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가.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나.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 다.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제6관 분쟁조정 등

제28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1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정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2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3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34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 비행기·열차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약관 제11조)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비행기·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별표 2)

비행기·열차에 의한 교통사고 분류표

이 보험에서 비행기·열차에 의한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분류표에 따른 항공 및 우주운수사고, 철도사고를 말합니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항공 및 우주운수사고	
탑승자가 다친 동력항공기 사고	V95
탑승자가 다친 무동력항공기 사고	V96
기타 명시된 항공운수 사고	V97
2. 철도사고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충돌로 다친 보행자	V05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충돌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5
운수사고에서 다친 열차 또는 철도차량 탑승자	V81

주) 자동차와의 충돌에 의한 철도사고, 열차 또는 철도차량 수리고내의 사고, 원형기관차고 또는 전차대에서의 사고,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관련되지 않은 철도구내의 사고, 천재지변에 의한 철도사고는 철도사고에서 제외됩니다.

(별표 3)

장애등급분류

등 급	신 체 장 해
제1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 해 등 급 분 류 해 설)

1. 장애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애의 정의

장애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애의 평가시 하나의 장애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 제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외의 A.M.A. 지침에 의한 장애인단내용도 인정될 수 있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 (1) 이동동작
- (2) 음식물 섭취동작
- (3) 옷 입고 벗기 동작
-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 (5) 목욕

3. “항상 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중 (1)의 이동동작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애가 아닌 시야장애, 안구운동장애 등의 눈의 장애는 제외한다.

5.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ㄱ, ㅋ, ㆁ), 치설음(ㄴ, ㄷ, ㄹ), 구개음(ㅈ, ㅊ, ㅌ), 후두음(ㅇ, ㆁ)중 3종류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7. 신체의 동일부위

-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 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마. 장애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3,4,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8. “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 다. 장애의 호전가능성이 있다하여도 장애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무배당 VIP특정 교통재해보장보험
보통보험약관

(2종: 휴일 비행기·열차 교통재해보장형)

무배당 VIP특정 교통재해보장보험 보통보험약관

(2종: 휴일 비행기·열차 교통재해보장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이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

한 때에는 청약서 부분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

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
2.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제6조 【피보험자의 변경】

- ①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피보험자는 변경되는 피보험자와 같은 성(性)에 한 합니다.
- ② 회사는 새로운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의 변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피보험자의 변경시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내지 제4항, 제2조(청약의 철회), 제8조(계약의 소멸), 제9조(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항 내지 제4항, 제19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제20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④ 제1항의 경우 변경되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변경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때로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때로부터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⑤ 제4항의 경우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 ⑥ 피보험자의 변경시 제8조(계약의 소멸) 제2항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제8조 【계약의 소멸】

- ①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② 이 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6조(피보험자의 변경)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 신용카드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보험료 매출승인일, 이 약관의 다른 규정에서도 같습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20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19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 【휴일의 정의】

이 특약에서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휴일」로 합니다. 다만, 보험사고의 발생지가 국외인 경우 사고발생지의 「토요일」과 「사고발생지의 법률에

의해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휴일”로 합니다.

제11조 【“비행기·열차 사고”의 정의】

이 계약에서 “비행기·열차에 의한 교통사고”라 함은 별표2(비행기·열차에 의한 교통사고 분류표)에서 정하는 항공 및 우주운수사고, 철도 사고를 말합니다

제1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휴일에 발생한 비행기·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별표3(장해등급분류표)에서 정한 제1급의 장해(이하 “제1급의 장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휴일 비행기·열차 교통재해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휴일에 발생한 비행기·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로 인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휴일에 발생한 비행기·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제1급의 장해상태의 등급이 휴일에 발생한 비행기·열차에 의한 교통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일에 발생한 비행기·열차에 의한 교통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휴일에 발생한 비행기·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두 종목 이상의 제1급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한종목에 해당하는 휴일 비행기·열차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④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휴일에 비행기·열차에 의한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휴일에 발생한 비행기·열차에 의한 교통재해일부터 1년 이내에 그 교통재해로 인하여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5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종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6조 【해약환급금】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제17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8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보장금 청구권

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19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 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 19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계약전 알릴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청

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②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청약서상의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을 해지합니다.

⑤ 제19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1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2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3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4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5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26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0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7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 의한 휴일 비행기·열차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6조(보험금 등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8조 【계약내용의 교환】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나.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다.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제6관 분쟁조정 등

제29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2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3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4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35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 휴일 비행기·열차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약관 제12조)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휴일에 발생한 비행기·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별표 2)

비행기·열차에 의한 교통사고 분류표

이 보험에서 비행기·열차에 의한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분류표에 따른 항공 및 우주운수사고, 철도사고를 말합니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1. 항공 및 우주운수사고	V95
탑승자가 다친 동력항공기 사고	V96
탑승자가 다친 비행기 사고	V97
2. 철도사고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충돌로 다친 보행자	V05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충돌로 다친 철도차량 탑승자	V15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충돌로 다친 철도차량 탑승자	V81

주) 자동차와의 충돌에 의한 철도사고, 열차 또는 철도차량 수리고내의 사고, 원형기관차고 또는 전차대에서의 사고,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관련되지 않은 철도구내의 사고, 천재지변에 의한 철도사고는 철도사고에서 제외됩니다.

(별표 3)

자녀등급별표

등 급	신 체 장 해
제1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팔·다리 중 어느 한쪽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 해 등 급 분 류 해 설)

1. 장애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애의 정의

장애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애의 평가시 하나의 장애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 제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외의 A.M.A. 지침에 의한 장애인단내용도 인정될 수 있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 (1) 이동동작
- (2) 음식물 섭취동작
- (3) 옷 입고 벗기 동작
-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 (5) 목욕

3. “항상 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중 (1)의 이동동작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애가 아닌 시야장애, 안구운동장애 등의 눈의 장애는 제외한다.

5.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ㄱ, ㅋ, ㆁ), 치설음(ㄴ, ㄷ, ㄹ), 구개음(ㅈ, ㅊ), 후두음(ㅇ, ㆁ)중 3종류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7.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 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애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3,4,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8. “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다. 장애의 호전가능성이 있다하여도 장애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무배당 VIP특정 교통재해보장보험
보통보험약관

(3종: 대중교통재해보장형)

무배당 VIP특정 교통재해보장보험 보통보험약관

(3종: 대중교통재해보장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이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 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

한 때에는 청약서 부분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

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
2.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제6조 【피보험자의 변경】

- ①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피보험자는 변경되는 피보험자와 같은 성(性)에 한 합니다.
- ② 회사는 새로운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의 변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피보험자의 변경시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내지 제4항, 제2조(청약의 철회), 제8조(계약의 소멸), 제9조(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항 내지 제4항, 제18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제19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④ 제1항의 경우 변경되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변경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때로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때로부터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⑤ 제4항의 경우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 ⑥ 피보험자의 변경시 제8조(계약의 소멸) 제2항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제8조 【계약의 소멸】

- ①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에게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② 이 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6조(피보험자의 변경)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 신용카드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보험료 매출승인일, 이 약관의 다른 규정에서도 같습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9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18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 【“대중교통사고”의 정의】

이 계약에서 “대중교통사고”라 함은 별표2(대중교통사고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사고(이하 “대중교통사고”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대중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별표3(장해등급분류표)에서 정한 제1급의 장해(이하 “제1급의 장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대중교통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대중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

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제1급의 장해상태의 등급이 대중교통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대중교통사고로 인하여 두 종목 이상의 제1급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한종목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④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대중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대중교통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대중교통사고로 인하여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종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5조 【해약환급금】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제16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7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보장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18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계약전 알릴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청

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②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청약서상의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을 해지합니다.

⑤ 제18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0조 【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2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3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25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9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6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5조(보험금 등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

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7조 【계약내용의 교환】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나.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다.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제6관 분쟁조정 등

제28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1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2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3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34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 대중교통사망보험금(약관 제11조)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대중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1,000만원

(별표 2)

대중교통사고분류표

1. 이 보험에서 대중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목적으로 승·하차 또는 승강장내 대기중 대중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

발등의 교통사고
나.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입장객을 포함합니다)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제1호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법정승차 정원 26인 이상의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 단,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법정승차정원이 26인 이상인 시내승합자동차, 시외승합자동차, 고속승합자

동차를 말합니다.

라.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개인

택시(렌트카 제외)

※ 단, 일반택시는 법정승차정원이 6인이하 사업용 자동차이고 개인택시는 법정승차정원이 6인이하인 자동차로서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

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행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별표 3)

장애등급분류

등 급	신 체 장 해
제1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양측의 청각은 정상에 도달한 장애를 잃었을 때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흉·복부 장기(예) 두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예) 두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양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팔의 발목이상을 잃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팔의 발목이상을 잃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양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 해 등 급 분 류 해 설)

1. 장애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애의 정의

장애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애의 평가시 하나의 장애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 제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외의 A.M.A. 지침에 의한 장애진단내용도 인정될 수 있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 (1) 이동동작
- (2) 음식물 섭취동작
- (3) 옷 입고 벗기 동작
-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 (5) 목욕

3. “항상 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중 (1)의 이동동작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해가 아닌 시야장해, 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애는 제외한다.

5.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ㄱ, ㅋ, ㆁ), 치설음(ㄴ, ㄷ, ㄹ), 구개음(ㅈ, ㅊ), 후두음(ㅇ, ㆁ)중 3종류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써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7. 신체의 동일부위

-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 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마. 장애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3,4,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8. “영구히”

-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 다. 장애의 호전가능성이 있다하여도 장애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무배당 VIP특정 교통재해보장보험
보통보험약관

(4종: 휴일 대중교통재해보장형)

무배당 VIP특정 교통재해보장보험 보통보험약관

(4종: 휴일 대중교통재해보장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이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

한 때에는 청약서 부분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

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
2.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제6조 【피보험자의 변경】

- ①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피보험자는 변경되는 피보험자와 같은 성(性)에 한 합니다.
- ② 회사는 새로운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의 변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피보험자의 변경시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내지 제4항, 제2조(청약의 철회), 제8조(계약의 소멸), 제9조(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항 내지 제4항, 제19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제20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④ 제1항의 경우 변경되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변경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때로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때로부터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⑤ 제4항의 경우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 ⑥ 피보험자의 변경시 제8조(계약의 소멸) 제2항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제8조 【계약의 소멸】

- ①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② 이 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6조(피보험자의 변경)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 신용카드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보험료 매출승인일, 이 약관의 다른 규정에서도 같습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20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19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 【휴일의 정의】

이 특약에서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휴일」로 합니다. 다만, 보험사고의 발생지가 국외인 경우 사고발생지의 「토요일」과 「사고발생지의 법률에 의해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휴일”로 합니다.

제11조 【“대중교통사고”의 정의】

이 계약에서 “대중교통사고”라 함은 별표2(대중교통사고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사고(이하 “대중교통사고”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제1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휴일에 대중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별표3(장해등급분류표)에서 정한 제1급의 장해(이하 “제1급의 장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휴일 대중교통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휴일에 발생한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휴일에 발생한 대중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제1급의 장해상태의 등급이 휴일에 발생한 대중교통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일에 발생한 대중교통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동일한 대중교통사고로 인하여 두 종목 이상의 제1급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한종목에 해당하는 휴일 대중교통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④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휴일에 대중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휴일에 발생한 대중교통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대중교통사고로 인하여 제12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5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6조 【해약환급금】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제17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8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보장금 청구권

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19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 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 19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계약전 알릴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청

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②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청약서상의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을 해지합니다.

⑤ 제19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1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2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3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4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5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26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0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7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 의한 휴일 대중교통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6조(보험금 등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8조 【계약내용의 교환】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나.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다.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제6관 분쟁조정 등

제29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31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2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3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4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35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 휴일 대중교통사망보험금(약관 제12조)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휴일에 발생한 대중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1,000만원

(별표 2)

대중교통사고분류표

1. 이 보험에서 대중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목적으로 승·하차 또는 승강장내 대기중 대중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

발등의 교통사고
나.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입장객을 포함합니다)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제1호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법정승차 정원 26인 이상의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 단,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법정승차정원이 26인 이상인 시내승합자동차, 시외승합자동차, 고속승합자

동차를 말합니다.

라.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개인

택시(렌트카 제외)

※ 단, 일반택시는 법정승차정원이 6인이하 사업용 자동차이고 개인택시는 법정승차정원이 6인이하인 자동차로서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

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행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별표 3)

장애등급분류

등 급	신 체 장 해
제1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양측의 시력은 양안으로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양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발목에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발목에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 해 등 급 분 류 해 설)

1. 장애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애의 정의

장애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애의 평가시 하나의 장애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 제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외의 A.M.A. 지침에 의한 장애진단내용도 인정될 수 있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 (1) 이동동작
- (2) 음식물 섭취동작
- (3) 옷 입고 벗기 동작
-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 (5) 목욕

3. “항상 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중 (1)의 이동동작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해가 아닌 시야장해, 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애는 제외한다.

5.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ㄱ, ㅋ, ㆁ), 치설음(ㄴ, ㄷ, ㄹ), 구개음(ㅈ, ㅊ), 후두음(ㅇ, ㆁ)중 3종류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써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7. 신체의 동일부위

-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 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마. 장애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3,4,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8. “영구히”

-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 다. 장애의 호전가능성이 있다하여도 장애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